

거창군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09 ~
----------	--------

제출연월일	2009. 5. .
제 출 자	거창군수

1. 개정이유

-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에 대한 투표권 부여, 투표연령 하향 조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민투표법」이 개정(법률 제9468호, 2009.2.12)됨에 따라 그 취지에 맞도록 반영함으로써 주민투표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순화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목적조항을 간명화 함(안 제1조).

- 「주민투표법」(이하 “법”이라 한다) → 「주민투표법」

나.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는 수단을 구체화하고,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군의 책무를 신설함(안 제2조제3항 및 안 제2조제4항 신설).

다. 「주민투표법」에서 개정된 주민투표권 연령에 맞게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국인의 주민투표권 연령을 하향 조정함(안 제3조).

- 주민투표권 연령 조정 : 20세 이상 → 19세 이상

라. 주민투표권자, 주민투표청구권자 중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없는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과 외국인이 유효한 청구권자인지를 심사하기 위한 대체 수단을 마련함(안 제8조, 제9조, 제10조)

-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

- 주소 → 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

마. 「주민투표법」 등 상위법령과 개정 조례안에 맞도록 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서식 및 인용조항을 정비함
(안 제20조,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

바.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함.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 「주민투표법」 제2조, 제5조, 제9조
- 「지방자치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 「공직선거법」 제18조, 제80조, 제91조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의 : 기획감사실(법무통계담당, 예산담당)

라. 그 밖에

- 1)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 2) 입법예고(2009. 3. 9. ~ 2009. 3. 28.) 결과 : 특기사항 없음
-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주민투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주민투표법」(이하 “법”이라 한다)”를 “「주민투표법」”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를 “군수”라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를 “공보, 일간신문, 인터넷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하여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군수는 「주민투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조 중 “20세”를 “19세”로,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을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로, “거창군”을 “군”으로,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를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로, “갖춘 자는”을 “갖춘 사람은”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지방자치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자치법」 제4조제5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5조 중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9조제2항에 따라”로, “경우에”를 “경우”로, “10분의 1이상”을 “10분의 1 이상”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법 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각각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후단 중 “주민투표 청구권자인지 여부를”을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에 의거”를 “제1항에 따라”로, “증빙자료”를 “증명자료”로 한다.

제7조 중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으로,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으로, “교부 사실의 공표가 있는 날”을 “교부 사실을 공표한 날”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서명하고자 하는”을 “서명하려는”으로, “주민등록번호·주소”를 “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로 한다.

제9조 중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으로, “주소·주민등록번호”를 “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로, “첨부하여”를 “덧붙여”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로, “주민투표청구의 취지 및 이유 또는 청구인명부를”을 “청구인 서명부 또는 그 사본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1항에 의한 열람의 경우”를 “제1항에 따라 열람을 하는 경우”로, “주민등록번호”를 “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확인하고자 할”을 “확인하려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 시”를 “제1항에 따라 열람을 할 때”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1조 중 “법 제1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2조제7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본문 중 “법 제12조제3항과 동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 또는 이의신청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을 “법 제12조제3항의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 또는 법 제12조제5항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법 제1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2조제7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수리 여부의 결정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수리여부의 결정 처리기간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를 “주민투표청구의 수리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 해당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으로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설치) 군수는 주민투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유효서명의 확인
2. 주민투표와 관련한 이의신청의 심사·결정
3. 주민투표청구요건의 심사·결정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4조제1항 중 “1인”을 “1명”으로, “포함하여”를 “포함한”으로, “9인”을 “9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상당”을 “상응”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으로, “관련분야에 있어서”를 “관련분야에”로 한다.

제15조제3항 중 “제1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 중 결원으로 보궐 위촉된 위원”을 “제2항의 위원을 제외한 위촉위원 중 보궐위원”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3분의 1이상”을 “3분의 1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부의”를 “회의에 부치는”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그렇지 않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부의된”을 “올려진”으로, “관계공무원 및 이해관계인과 기타 참고인”을 “관계 공무원이나 이해관계인 또는 그 밖의 참고인”으로 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수당 등)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이해관계인 및 참고인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거창군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제1항 중 “하여서는 아니 된다”를 “해서는 안 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각각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다음날”을 각각 “다음 날”로 한다.

제20조제1항·제2항·제3항·제4항·제5항 및 제6항 중 “의 규정에 의한”을 각각 “에 따른”으로, “의한다”를 각각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6조제1항”을 “법 제10조제3항 및 이 조례 제6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8조제2항”을 “제8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법 제12조제1항”을 “법 제9조제2항 및 법 제12조제1항”으로 한다.

제21조 중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으로,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으로, “인터넷에의 게시 또는 게재로써”를 “인터넷에 게시하거나 게재하는 방법으로”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투표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주민투표법」----- ----- -----.</p>
<p>제2조(군의 책무) ① <u>거창군수</u>(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이 주민투표권을 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p> <p>② (생략)</p> <p>③ 군수는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u>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성실히 제공하여야</u> 한다.</p> <p><신설></p>	<p>제2조(군의 책무) ① <u>군수</u>----- ----- -----.</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 ----- ----- <u>공보, 일간신문, 인터넷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하여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u>-----.</p> <p>④ 군수는 「주민투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p>

현행	개정안
<p>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20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u>거창군</u>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영주의 체류자격을 <u>갖춘 자</u>는 주민투표권이 있다.</p>	<p>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19세 -----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 <u>군</u>-----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 ----- <u>갖춘 사람</u>은 -- -----.</p>
<p>제4조(주민투표의 대상)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사항 등에 대하여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략) 2. 「지방자치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리의 구역변경과 폐치·분합 3. ~ 4. (생략) 5. 법 제7조제2항제5호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 <u>기타</u> 다른 법률에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 6. <u>기타</u> 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사항 	<p>제4조(주민투표의 대상)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행과 같음) 2. 「지방자치법」 제4조제5항에 따른 ----- 3. ~ 4. (현행과 같음) 5. ----- ----- <u>그 밖의</u> ----- 6. <u>그 밖에</u> ----- -----
<p>제5조(투표청구 주민수)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u>경우</u>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u>10분의 1</u>이상으로 한다.</p>	<p>제5조(투표청구 주민수)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 ---- <u>경우</u> ----- ----- <u>10분의 1 이상</u>-----.</p>

현행	개정안
<p>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p> <p>① 청구인서명부에 <u>서명하고자</u>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u>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u> 및 서명일자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p> <p>② (생략)</p>	<p>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p> <p>① ----- 서명하려는 ----- 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9조(청구인서명부의 제출) 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서에는 청구인대표자의 <u>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u>,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를 <u>첨부하여</u> 제출할 수 있다.</p>	<p>제9조(청구인서명부의 제출) 법 제12조 제1항에 따른 ----- 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 덧붙여 -----.</p>
<p>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 군수는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읍·면별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정하여 <u>주민투표청구의 취지 및 이유 또는 청구인명부를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u> 하여야 한다.</p> <p>② 군수는 <u>제1항에 의한 열람의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노출시키지 않는 사본을 별도로 준비하여 열람하게</u>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사항을 <u>확인하고자</u> 할 경우에만 원본의 해당 부분만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p>	<p>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 -----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 청구인서명부 또는 그 사본을 -----.</p> <p>② --- 제1항에 따라 열람을 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 확인하려는 -----.</p>

현행	개정안
<p>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 시에는 관계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p> <p>④ 군수는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할 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라 열람을 할 때----- -----.</p> <p>④ ---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 ----- 제1항에 따른 ----- -----.</p>
<p>제11조(서명보정기간) 법 제1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보정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p>	<p>제11조(서명보정기간) 법 제12조제7항에 따른 ----- -----.</p>
<p>제12조(처리기간) ① (생략)</p> <p>② 군수는 법 제12조제3항과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 또는 이의신청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구인 대표자의 주민투표청구의 수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을 하게 한 경우에는 보정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p> <p>③ 군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의 기간 내에 수리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수리여부의 결정 처리기간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p>	<p>제12조(처리기간) ① (현행과 같음)</p> <p>② --- 법 제12조제3항의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 또는 법 제12조제5항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 ----- ----- ----- 법 제12조제7항에 따라 ----- -----.</p> <p>③ ----- ----- 주민투표청구의 수리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 해당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 -----.</p>

현행	개정안
<p>제13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설치)</p> <p>① 군수는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p> <p>②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유효서명의 확인 2. 주민투표와 관련한 이의신청의 심사·결정 3. 주민투표청구요건의 심사·결정 4.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p>제13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설치)</p> <p>군수는 주민투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유효서명의 확인 2. 주민투표와 관련한 이의신청의 심사·결정 3. 주민투표청구요건의 심사·결정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p>제14조(심의회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군 의원과 공무원이 아닌 자로 하여야 한다.</p> <p>② (생략)</p> <p>③ 심의회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2. (생략) 3. 변호사, 대학교수, 시민단체대표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4. 기타 주민투표 등 관련분야에 있어서 전문성과 식견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p>④ (생략)</p>	<p>제14조(심의회 구성) ① ----- ----- 1명-- 포함된 9명 ----- ----- -----.</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 각 호의 어느 하나----- ----- -----.</p> <p>1. ~ 2. (현행과 같음)</p> <p>3. ----- ----- 상응----- -----</p> <p>4. 그 밖에 ----- 관련분야에 ----- -----</p> <p>④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제19조(투표운동의 제한) ① 법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은 누구든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호별 방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②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옥외집회(공개 장소에서의 연설회와 대담·토론회를 말한다)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이를 할 수 없다.</p>	<p>제19조(투표운동의 제한) ① 법 제22조 제2항에 따라 ----- ----- 다음 날 ----- ----- --- 해서는 안 된다.</p> <p>②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 ----- ----- 다음 날 ----- -----.</p>
<p>제20조(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서식)</p> <p>①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p> <p>②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p> <p>③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와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p> <p>④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 서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p> <p>⑤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p> <p>⑥ 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p>	<p>제20조(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서식)</p> <p>① -----에 따른 ----- ----- ----- 따른다.</p> <p>② -----에 따른 ----- ----- --- 따른다.</p> <p>③ 법 제10조제3항 및 이 조례 제6조 제1항에 따른----- ----- ----- 따른다.</p> <p>④ 제8조제1항에 따른 ----- ----- 따른다.</p> <p>⑤ 법 제9조제2항 및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 따른다.</p> <p>⑥ -----에 따른 ----- ----- 따른다.</p>

현행	개정안
<p>제21조(공표방법 등) 법 제8조제2항, 법 제9조제4항, 법 제10조제2항, 법 제12조제3항, 법 제12조제8항 및 <u>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u> 공표와 제10조제4항 및 법 제13조제2항, <u>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u> 공고는 관보·공보·게시판·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과 <u>인터넷에의 게시 또는 게재로</u>써 한다.</p>	<p>제21조(공표방법 등) ----- ----- ----- <u>법 제13조제1항에 따른</u> ----- ----- <u>법 제26조제1항에 따른</u> ----- ----- ---- <u>인터넷에 게시하거나 게재하는</u> <u>방법으로</u> --.</p>

[별지 제1호서식]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서			
청구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 이유			
<p>「주민투표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p>			
거창군수 귀하			
<p>※ 작성요령</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민등록번호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 3.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4.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별지 제2호서식]

청구인대표자증명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주민투표 청구요지			
서명요청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제외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지역 :		
<p style="text-align: center;">위 사람은 「주민투표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대표자로서 위와 같이 주민투표청구권자의 서명을 요청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거창군수 (인)</p>			
<p>※ 작성요령</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민등록번호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 3.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4.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별지 제4호서식]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주민투표 청구요지			
청구인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수임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p>「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거창군 주민투표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의 위임사실을 신고하였으며, 수임인은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거창군수(인)</p>			
<p>※ 작성요령</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주민등록번호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 4.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5.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청구인서명부

번호	성명	주민등록 번호	주소	서명 또는 날인	서명 일자	비고

※ 작성요령

1. 번호란에는 서명순서에 따라 일련번호를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주민등록번호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
4. 주소란에는 지번까지 기재하며, 아파트 등은 단지명과 동과 호수를 기재. 다만,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5.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본인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자필로 성명을 기재하거나 날인
6. 서명자가 서명을 철회하거나, 무효인 서명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붉은선으로 두줄을 그어 삭제하고, 비고란에 그 삭제일자를 기재

관계 법령

□ 「주민투표법」 [시행 2009.2.12] [법률 제9468호, 2009.2.1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에 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의 대상·발의자·발의요건·투표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주민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5.11>

제2조(주민투표권행사의 보장)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민투표권자가 주민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제1항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09.2.12>

③ 공무원·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투표인명부를 열람하거나 투표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9.2.12>

제3조(주민투표사무의 관리) ① 주민투표사무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있어서는 특별시·광역시·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자치구·시 또는 군에 있어서는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한다.

② 행정기관 그 밖의 공공기관은 주민투표관리기관으로부터 주민투표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구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조(정보의 제공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일간신문, 인터넷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하여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관할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는 주민투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명회·토론회 등을 개최하여야 한다.

③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명회·토론회 등을 개최하는 때에는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달리하는 자가 균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투표권) ① 19세 이상의 주민 중 제6조제1항에 따른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주민투표권이 있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사람에게는 주민투표권이 없다. <개정 2009.2.12>

1.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재외국민

2.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자격(체류자격변경허가 또는 체류기간연장허가를 통하여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람

②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은 투표일 현재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 2009.2.12>
[2009.2.12 법률 제9468호에 의하여 2007.6.28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 제1항을 개정함.]

제5조(주민투표권) ① 20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권이 없는 자를 제외한다)는 주민투표권이 있다.

② 20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자격(체류자격변경허가 또는 체류기간연장허가를 통하여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갖춘 자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자는 주민투표권이 있다.

③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은 투표일 현재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시행 2004. 7.30] [법률 제7124호, 2004. 1.29, 제정]

제7조(주민투표의 대상) ①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으로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은 이를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다.

1. 법령에 위반되거나 재판중인 사항

2.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또는 사무에 속하는 사항

3.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회계·계약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과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분담금 등 각종 공과금의 부과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4. 행정기구의 설치·변경에 관한 사항과 공무원의 인사·정원 등 신분과 보수에 관한 사항
5. 다른 법률에 의하여 주민대표가 직접 의사결정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는 공공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다만,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가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동일한 사항(그 사항과 취지가 동일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주민투표가 실시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항

제8조(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폐치)·분합(분합) 또는 구역변경, 주요시설의 설치 등 국가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민투표의 실시구역을 정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구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표하여야 하며, 공표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에 관하여는 제7조, 제16조, 제24조제1항·제5항·제6항, 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조(주민투표의 실시요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 또는 지방의회의 청구에 의하거나 직권에 의하여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② 19세 이상 주민 중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주민투표권이 없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주민투표청구권자"라 한다)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 1 이상 5분의 1 이하의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서명으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9.2.12>

1. ~ 2. 삭제 <2009.2.12>

- ③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는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주민등록표, 재외국민의 국내거소신고표 및 외국인등록표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09.2.12>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1월 10일까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하여야 한다.
- ⑤ 지방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권에 의하여 주민투표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지방의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0조(청구인대표자의 선정과 서명의 요청 등) ① 주민이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청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이하 "청구인대표자"라 한다)를 선정하여야 하며, 선정된 청구인대표자는 인적사항과 주민투표청구의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구인대표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청구인대표자증명서를 교부하고 그 사실을 공표하여야 한다.

③ 청구인대표자와 서면에 의하여 청구인대표자로부터 서명요청권을 위임받은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서명요청기간 동안 주민에게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이 제한되는 기간은 서명요청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청구인서명부에 서명을 한 자가 그 서명을 철회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청구인서명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되기 전에 이를 철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구인대표자는 즉시 청구인서명부에서 그 서명을 삭제하여야 한다.

제12조(청구인서명부의 심사·확인 등) ① 청구인대표자는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요청기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자치구·시 또는 군의 경우에는 5일 이내에 주민투표청구서와 청구인서명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명은 이를 무효로 한다.

1. 주민투표청구권자가 아닌 자의 서명
2. 누구의 서명인지 확인하기 어려운 서명
3. 서명요청권이 없는 자의 요청에 의하여 행하여진 서명
4. 동일인이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2 이상의 유효한 서명을 한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서명을 제외한 나머지 서명
5.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요청기간외의 기간에 행하여졌거나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요청이 제한되는 기간에 행하여진 서명
6. 강요·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행하여진 서명
7. 이 법의 위임에 의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방식과 절차에 위배되는 서명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청구서와 청구인서명부가 제출된 때에는 지체없이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하고, 청구인서명부 또는 그 사본을 7일간 공개된 장소에 비치하여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청구인서명부의 서명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람기간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람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이의신청인과 청구인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청구인서명부의 서명이 무효인 서명으로 판정되어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청구인대표자로 하여금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이를 보정하게 할 수 있다.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구인대표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1. 유효한 서명의 총수(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정을 요구한 때에는 그 보정된 서명을 포함한다)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에 미달되는 경우
2. 주민투표청구서와 청구인서명부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경과하여 제출된 경우
3.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기간 이내에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

⑨ 이 법에 규정된 사항외에 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 서명요청, 청구인서명부의 작성·제출방법, 서명에 대한 심사·확인 등 주민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3조(주민투표의 발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요지를 공표하고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1.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주민투표를 발의하겠다고 통지한 경우
2. 제9조제2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가 적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를 얻은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투표를 발의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표일부터 7일 이내(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의 발의가 금지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에 투표일과 주민투표안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가 주민투표청구의 목적을 수용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주민투표를 발의하지 아니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의 규정에 의한 선거가 실시되는 때에는 그 선거의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동안에는 주민투표를 발의할 수 없다.

제16조(주민투표실시구역) 주민투표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다만, 특정한 지역 또는 주민에게만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인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은 때에는 관계 시·군·구 또는 읍·면·동을 대상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제22조(투표운동의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투표운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야간호별방문 및 야간옥외집회

2. 투표운동을 목적으로 서명 또는 날인을 받는 행위

3.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연설금지장소에서의 연설 행위

4.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91조에서 정하는 확성장치 및 자동차의 사용 제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야간호별방문 및 야간옥외집회가 금지되는 시간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6조(재투표 및 투표연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투표의 전부 또는 일부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날부터 20일 이내에 무효로 된 투표구의 재투표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투표일은 늦어도 투표일전 7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투표를 실시하는 때에는 그 판결에 특별한 명시가 없는 한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초 투표에 사용된 투표인명부를 사용한다.

③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투표를 실시할 수 없거나 실시하지 못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하여 투표를 연기하거나 다시 투표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법」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①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바꾸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법률로 정하되, 시·군 및 자치구의 관할 구역 경계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 또는 그 명칭이나 구역을 변경할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이하 "지방의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라 주민투표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 리의 구역은 자연 촌락을 기준으로 하되, 그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리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 동·리에서는 행정 능력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동·리를 2개 이상의 동·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리를 하나의 동·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동·리(이하 "행정동·리"라 한다)를 따로 둘 수 있다.

⑥ 행정동·리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

제6조(사무소의 소재지) 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의 소재지와 자치구가 아닌 구 및 읍·면·동의 사무소의 소재지는 종전과 같이 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동은 제4조제5항에 따른 행정동(행정동)을 말한다.

② 제1항의 조례는 그 지방의회의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제14조(주민투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 등에 대하여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② 주민투표의 대상·발의자·발의요건, 그 밖에 투표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4조 (공표 방법 등) 법 제16조제7항, 이 영 제11조, 제12조제2항, 제15조제2항, 제16조제7항 및 제22조에 따른 관련 사항의 공표는 관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게시판·전산망 또는 일간신문에 게시하거나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25조 (보고 등)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거나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법 제16조제7항, 이 영 제12조제2항, 제15조제2항, 제16조제7항 및 제22조에 따른 공표를 한 경우
2. 법 제16조제6항에 따라 감사결과에 따른 필요 조치를 요구하고 그 조치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

□ 「공직선거법」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 ① 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선거권이 없다. <개정 2004.3.12, 2005.8.4>

1.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3. 선거법,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및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 또는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그 재임중의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내지 제132조(알선수뢰)·「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한다)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 ② 제1항제3호에서 "선거법"이라 함은 제16장 벌칙에 규정된 죄와 「국민투표법」 위반의 죄를 범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05.8.4>

③ 제1항제3호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 (경합범과 처벌예)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분리 심리하여 따로 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7.11.14, 2004.3.12, 2005.8.4>

제80조(연설금지장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이나 장소에서는 제79조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의 연설·대담을 할 수 없다. <개정 2004.3.12>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건물·시설. 다만, 공원·문화원·시장·운동장·주민회관·체육관·도로변·광장 또는 학교 기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선박·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구내 및 지하철역구내
3. 병원·진료소·도서관·연구소 또는 시험소 기타 의료·연구시설

제91조(확성장치와 자동차 등의 사용제한) ①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장소 또는 대담·토론회장에서 연설·대담·토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04.3.12>

② 삭제 <2004.3.12>

③ 누구든지 자동차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연설·대담장소에서 자동차에 승차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와 같은 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선전벽보 등을 자동차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3.12, 2005.8.4>

④ 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은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우외에 다음 각호에 의한 수 이내에서 관할선거관리위원회가 교부한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와 선박에 제64조(선전벽보)의 선전벽보, 제65조(선거공보)의 선거공보 및 제66조(선거공약서)의 선거공약서를 부착하여 운행하거나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5.4.1, 1997.11.14, 2000.2.16, 2005.8.4, 2007.1.3>

1. 대통령선거와 시·도지사선거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마다 각 5대·5척 이내

2. 지역구국회의원선거와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

후보자마다 각 5대·5척 이내

3. 지역구시·도의원선거

후보자마다 각 2대·2척 이내

4.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

후보자마다 각 1대·1척